

경제단체 공동건의

지배구조 규제 강화 입법 관련 경제단체 공동건의

- 2024. 9. 10 -

FKI 한국경제인협회

 **대한상공회의소**
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

 **한국무역협회**

KEF 한국경영자총협회
KOREA ENTERPRISES FEDERATION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 **FOMEK** 한국중견기업연합회
Federation of Middle Market Enterprises of Korea

 **한국상장회사협의회**

KOSDAQ 코스닥협회

목 차

I. 국회 입법동향.....	1
II. 세부 안건별 검토의견.....	4
1. 이사 충실험무 확대.....	4
2. 집중투표제 의무화.....	6
3.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.....	8
4.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.....	10
5.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.....	12
6.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.....	13
III. 경제계 의견.....	15
[참고]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이슈별 경제계 검토의견.....	16

I. 국회 입법동향

- **(입법현황)** 22대 국회 개원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소수주주 권리 강화를 명목으로 내세운 의원 발의안이 법사위·정무위 등에 다수 상정
- **(법제사법위원회)**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 5건 포함, 8 월 말 기준 총 14건의 상법 개정안이 지배구조 규제 내용을 포함

법안명 (의안번호)	대표발의 (발의일)	법안 내용
상법 (2200687) (2200457) (2200144)	강훈식(민) ('24.6.20) 박주민(민) ('24.6.13) 정준호(민) ('24.6.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◆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'회사'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◆ 전자주주총회 의무화◆ 이사의 보수에 대한 주주승인제도* 도입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이사 보수정책, 보수산정방법 등을 주총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제도
상법 (2200188)	정준호(민) ('24.6.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◆ 자본금 감소 방법으로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, 주주총회에서 아래 내용 설명 필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주식병합사유, 비율, 주식종류, 효력 발생시 발행가능 주식 총수◆ 주주불이익 우려되는 병합의 경우 유지청구권 가능
상법 (2200234)	정준호(민) ('24.6.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◆ 단순분할 신설회사와 분할합병 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 합병의 때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신주배정 금지◆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합병의 때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에 대해 신주 또는 분할승계회사의 자사주 배정 금지
상법 (2200289)	정준호(민) ('24.6.1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◆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제한 대상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의결권 10% 이상 보유 주주- 이사·집행임원·감사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-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◆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는 발행주식총수의 10%로 제한◆ 정관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상세내용 기재 등
상법 (2200358)	정준호(민) ('24.6.1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◆ 자기주식 처분시 주식평등 원칙 및 공정성 담보를 위해, 회사 보유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 부여
상법 (2200428)	정준호(민) ('24.6.1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◆ 소수주주 축출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지배주주 인정 요건을 발행주식총수 95%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② 발행주식총수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③ 보유주식 산정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

법안명 (의안번호)	대표발의 (발의일)	법안 내용
상법 (2200681)	차규근(조) ('24.6.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(현행) 사업보고서, 감사보고서 등을 주총 1주일 전까지 공시 ◆ (개정) 주총 소집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, 주총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 공고
상법 (2201063)	정부 ('24.6.2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주주총회 활성화 ◆ 회사가 주식매매대금을 공탁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고, 회사가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인정하여 주주보호를 강화
상법 (2201823)	김현정(민) ('24.7.1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는 이사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,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는 이를 명시하지 않음 ◆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
상법 (2202571)	김현정(민) ('24.8.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 ◆ 주총에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는 이사 면책 부여
상법 (2202706)	오기형·차 규근(민) ('24.8.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주주 간 이익 침해 금지 의무 부과 ◆ 주주총회 통지기한 확대(현행 2주 전→4주 전) ◆ 임시주총에 한해 주총 3주 전까지 주주제안 허용 ◆ 이사 보수와 관련, 부당 산정된 보수 환수의무 부과, 대규모 상장사에 보수위원회 설치 및 미등기임원 포함 임원 보수 체계 심의 · 의결 ◆ 상장사 임원 재직 중 업무상 범죄로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 임원 선임 제한 ◆ 대규모 상장사 주식 6개월간 0.01% 이상 보유 주주에 다중 대표소송 제기 권한 부여 ◆ 대규모 상장사에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 못함 ◆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 변경시 최대주주 · 특수관계인 합산 3% 초과 지분에 의결권 제한 ◆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· 특수관계인 합산 3%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 ◆ 상출제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는 계열회사간 주식의 양도, 이전, 합병 및 분할 등 중요한 주주총회 의결사안에 대해 최대주주 · 특수관계인 합산 3% 초과지분 의결권 제한
상법 (2202847)	박상혁(민) ('24.8.1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이사에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 ◆ 회사 합병시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주주에게 합병유지청구권 부여

- **(정무위원회)**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권 강화를 명목으로 하는 ‘상장회사 지배구조법’ 제정안 발의
 - *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안건은 소관위원회가 법사위이지만, ‘상장회사지배구조법’ 제정안은 적용대상을 상장회사로 한정하여 정무위에 우회 상정
 - * 상장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주요 6개 안건은 모두 상법과 관련된 사안임

<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주요 내용 >

구 분	주요 내용
이사 충실의무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사충실 대상 : 회사의 이익 → 회사와 전체 주주의 공평 이익
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→3명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감사위원 분리선출 : 이사로 선임 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식이 아니라, 감사위원을 먼저 선임하고, 선출된 감사위원을 이사로 선임 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%로 제한
집중투표제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사 선출시 집중투표제 의무화(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집중투표제 : 2인 이상 이사 선임시 1주당 선임이사의 수만큼 의결권 부여
전자투표제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전자투표제 의무화
독립이사제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용어변경(사외이사→독립이사)
권고적 주주제안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ESG 이슈에 관하여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권고적 주주제안 :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제도(주총 가결의 구속력x)

II. 세부 안건별 검토의견

1 이사 충실의무 확대

발의현황

- (발의자) 정준호·박주민·강훈식·박상혁·김현정 의원 위원회 법사위
- (주요내용) ① 이사 충실의무 확대, ② 이사에 공정의무 부과, ③ 합병 관련 소수주주 권리 강화(합병유지청구권 및 이사 손배책임 등)
- * ① 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)의 '회사' 외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(정준호案), 총주주(박주민案), 주주의 이익(강훈식案) 등 추가
 - * ② 김현정 의원안 : 이사 '공정의무' 신설(제382조의3 제2항),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한 이사의 공정의무 면책 부여(동조 제3항)
 - * ③ 박상혁 의원안 : 전체주주이익 공평 보호(제382조의3), 소수주주에 합병유지 청구권(제522조의4) 부여, 이사에 합병 관련 손배책임 부과(제522조의6) 등

문제점

- (투자 저해) 이사가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을 모두 확인하고 합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투자 결정 저해
- 최근 지분율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투자자들은 주로 재무적 투자자로 단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 성장에 대한 관심이 적음
 - * 외국인 지분율('23.6→'24.6) : 전체 상장사(26.9%→30.0%), 매출10대 상장사 (34.5%→46.8%)
 -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적 투자, 경제 상황을 고려한 고용창출 등에 대한 이사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가능성
- (기업 자금조달 애로) 투자를 위한 신주발행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(BW), 전환사채(CB) 발행시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되는데, 이를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문제삼는 것이 가능해짐

- (M&A 저해)**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&A 추진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하겠다는 국내 상장회사 비중이 절반 이상(52.9%) 차지
 - * 상장사 대상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시 M&A 추진 여부 조사(대한상의, '24)
→ 계획 재검토(44.4%), M&A 철회(8.5%), 계획 없음(2.0%), 추진(45.1%)
- (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)** 소수주주 이익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, 역설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할 우려 큼
 - 수많은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소송을 남발할 수 있어, 기업인들은 신산업 진출이나 M&A 등 과감한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결국 기업가치 훼손으로 연결될 우려

검토의견

- (반대)** 회사법 근간을 흔들고 소송 남발을 유발하는 충실의무 확대 반대
 - 이사가 회사에 대해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지는 현행 상법 및 민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,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 보호라는 표현의 기준도 불분명해서 이사의 책임 부담이 과도해짐

2 집중투표제 의무화

발의현황

- (발의자)** ❶ 오기형 · 차규근 상법개정안(의안번호 2202706, 법사위), ❷ 김남근 · 신장식 · 한창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(의안번호 2202991, 정무위)
- (주요내용)** 현행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(제542조의7 제4항)가 가능한데 발의안들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를 의무화
 - * 집중투표제 : 2인 이상 이사 선임시 1주당 선임이사의 수만큼 의결권 부여
- 제정안❷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그 밖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 청구요건을 현행 지분 3% 보유에서 '0.1% + 6개월 보유'로 대폭 완화시킴

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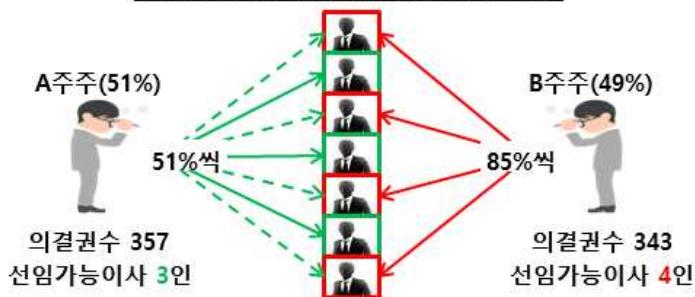
- (청구요건 완화)** 제정안의 경우 집중투표제 실시 청구요건을 대폭 완화 시킨 결과, 수많은 주주들이 청구권을 남발할 우려 큼
 - 이사회 구성을 좌우하는 이사 선출 방식의 중요도를 감안하여,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
 - * 비상장회사나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지분보유 요건이 3% 이상이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지분 1% 이상을 요구 (상법 제382조의2 제1항, 제542조의7 제2항)
- (기업자율성 훼손)**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한 것은 주주 절대다수의 동의에 따른 것인데, 집중투표를 의무화시킬 경우 주주의 자기 결정권이나 정관 자치주의 등 기업 자율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임
 -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려면 발행주식 총수 1/3 이상과 출석 주주 2/3 이상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(상법 제434조)
 - 이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3%까지만 행사가 허용되므로, 집중투표제 배제 결정은 주주 절대다수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임(상법 제542조의7)

- (자본다수결원칙 위배) 집중투표제는 의결권 행사 전략에 따라 2~3대 주주가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자본다수결 원리를 위배할 가능성 큼

<집중투표제에서의 2대 주주 이사회 장악 시나리오 예시>

- 집중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회사의 총 발행 주식은 100주
- 대주주 A는 51%(51주), 2대 주주는 49%(49주) 보유
- 총 7명의 이사 선임을 위해 주주총회 개최
- A주주는 총 357개의 의결권 보유(51주*7명), B주주는 총 343개(49주*7) 의결권 보유
- A주주는 7명 이사후보에 각각 51표 행사, B 주주 4명의 이사후보에 각각 85표 행사
- [결과] A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3명, B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4명 선임

집중투표 시 이사 선임 시나리오



- (경영권 공격세력에게 유리) 집중투표제는 제2~3대 주주들인 기관투자자를 위한 제도로서, 헤지펀드들은 단기수익을 노리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으나 소수주주들은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기 어려움

<집중투표제 국내 폐해사례>

- 2006년 칼 아이칸은 다른 헤지펀드와 연합하여 KT&G 주식 6.59% 매입
- KT&G 정관상 집중투표 배제 규정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주주제안을 통해 3명의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모든 이사를 집중투표를 통해 선출할 것 요구
- '06.3월 주총에서 칼 아이칸 측 사외이사 1인을 이사회에 진출시키고 그를 통해 KT&G에 부동산 매각, 자사주 소각, 회계장부 제출,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상장을 요구
- KT&G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총 2.8조원의 비용을 투입하였고, 칼 아이칸은 12월 주식매각 차익 1,358억과 배당금 124억 등 1,482억원 차익 실현

- (해외 입법례)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나라는 러시아, 멕시코, 칠레뿐

○ 미국은 1940년대 22개주에서 집중투표제를 강제했지만 기업사냥꾼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 부작용 경험으로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전환

* 현재 애리조나, 네브래스카, 노스다코타, 사우스다코타, 웨스트버지니아 등 기업이 적은 5개 주에서만 집중투표제 의무화 제도 유지

- * 미국 교원연금인 TIAA/CRFF는 투자방침서에서 경영 비효율을 이유로 집중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는 투자를 못하도록 규정
 -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일본은 주주 간에 파벌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1974년 집중투표제 실시를 회사 자율에 맡김
 - * 일본회사법 제342조에서 집중투표를 규정,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상 이를 배제
 - 집중투표제 의무화한 멕시코(포이즌필, 차등의결권), 칠레(차등의결권) 러시아(외국인투자제한, 황금주)는 한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
- (글로벌 스탠더드)** 미국·일본의 사례뿐만 아니라, 여타의 선진국들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거나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 추세
-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캐나다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중투표제를 허용

검토의견

- (반대)**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는 기업 재량과 주주 선택에 맡겨야 함

3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

발의현황

- (발의자)** ① 오기형·차규근 상법개정안(의안번호 2202706, 법사위), ② 김남근·신장식·한창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(의안번호 2202991, 정무위)
- (주요내용)**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전원 분리선출 의무화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합산(특수관계인 포함) 3% 적용
- * 감사위원 분리선출 : 이사로 선임 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식이 아니라, 감사위원을 먼저 선임하고, 선출된 감사위원을 이사로 선임

문제점

- (감사위원회 장악)** 현행 감사위원 1명 분리선출 의무를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로 변경하고 이를 각각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 3% 제한까지 적용하면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감사위원회 장악 및 경영권 위협 급증
- (기업 기밀 유출)** 감사위원은 이사로서 중요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과 기업 감사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어 경쟁기업, 해외 투기자본이 지지하는 위원 선임시 해당 기업의 주요 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 상존
- (이사의 권한)** 대표이사 선임, 중요자산 처분·양도, 대규모 재산 차입, 유상증자, 사채발행, 이익배당, 합병·분할 등의 결정 권한
- (감사의 권한)** 회사 영업 관련 보고 및 조사권, 각종 서류 및 회계장부 요구권, 경영진의 경영판단에 대한 타당성 감사권, 자회사 영업보고 요구권, 이사회 소집 청구권, 주총 소집 청구권, 각종 소 제기권 등
- (의결권 제한 폐해)** '3% 룰'은 1962년 상법 개정 당시 도입된 한국만의 낡은 규제로 주식회사 근간인 주주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재산권을 침해
- 대주주 의결권은 3%로 제한되는 반면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들은 '지분 쪼개기'를 통해 보유 의결권을 모두 행사하는 것이 가능

'03년 소버린 vs. SK 경영권 분쟁 사례

▪ 소버린은 '03.4월 SK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(주)의 주식 14.99% 집중 매입
→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도록 미리 5개 자회사에 분산
* 보유지분 14.99%를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자회사 5곳에 각각 2.99%씩 지분을 분산
* 요구사항 : 경영진 퇴진, 부실계열사 지원 반대, 배당 확대 등

▪ 주총에서 소버린 측 이사가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백기사(은행·채권단·국내외협력사) 및 위임장 확보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 → 이사 선출 단계에서 소버린 측 이사 선임을 가까스로 저지

SK 측 비용

▪ 투자 · 일자리 창출에 쓰일 1조원을 경영권 방어에 소진
* 해외기관투자기들은 SK 우선주를 미리 매입한 뒤, SK에 위임장 지원 대가로 우선주 매입 · 소각 요구
* SK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의 40%에서 90%로 폭등 → 위임장 확보에 막대한 비용 매몰

소버린 측 이득

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오르자, 2년 뒤 투자액의 5배에 달하는 시세차익 9,459억원을 거두고 철수
[주식매매차익] 원금의 4.3배인 7,558억원, [배당금] 458억원 등

검토의견

- (반대)** 감사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한 법적 강제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해외 입법례가 없는 규제로 폐지가 필요

4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

발의현황

- (발의자)** 김남근 · 신장식 · 한창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
- (주요내용)** ① 현행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, ② 정관에 이사회 총원 상한규정을 없애고 이사 총수의 1/3을 독립이사로 구성 의무화

<현행 이사회 구성 규제>

- 상법 제383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 한해 이사 1~2명 허용
-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1/4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3명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강화(제542조의8)

문제점

- (이사회 구성방식 강제)**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비중을 현행 상법상 사외이사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해 기업의 경영 자율성 훼손
 -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경우 이사회는 1명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(제141조(b)) 외에 이사회 구성을 기업 재량에 맡기는 것과 큰 차이
- (명칭변경 실익 없음)** 제정안은 독립이사를 '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(이사)'라는 설명 외에 별다른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지 않음
 - 현행 '사외이사(Outside Director)' 제도는 회사 경영진이 아닌 외부의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, '독립이사'로서의 기대 역할 이미 충분히 수행 중
- (사외이사 인력풀 부족)** 제정안은 독립이사의 이사회 비중을 확대시켰는데 현재도 상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는 세계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엄격해서 사외이사 후보군이 부족한 설정임

-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는 결국 기업 출신 사외이사의 이사회 진출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결국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료나 학계 출신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찾아야 함
- * **사외이사 결격사유** : ▶ 상장회사의 계열사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이사·집행임원·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, ▶ 해당회사 6년 이상 및 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사외이사로서의 재직
- * '19.3월 국내 57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267곳의 사외이사 이력 조사결과 → 857명 중 관료출신 321명(37%), 학계출신 282명(32.8%), 경영인 출신 154명(17.9%) → 사외이사의 약 70%가 관료·학계 출신 (출처 : CEO스코어)

- **(법체계 혼란)** 금융회사지배구조법, 자본시장법, 공정거래법 등에서 통용되는 사외이사 용어와 개념을 전부 변경해야 하는 등 법체계 혼란 초래

검토의견

- **(반대)** 현행 사외이사 용어 유지 및 이사회 구성 관련 규제 강화 반대
-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방식은 기업 자율재량에 맡기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며, 미국도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는 회사법에 규정이 없고 美 증권거래위원회(SEC)의 상장요건 정도에 그침
 - 현행 상법의 이사회 구성방식이나 지배구조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 보다 훨씬 엄격한데, 제정안은 현행 상법의 규제수준을 더욱 강화시킴

5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

발의현황

- (발의자)** 김남근 · 신장식 · 한창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
- (주요내용)** ESG 이슈에 관하여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“권고적 주주제안” 도입
 - 권고적 주주제안의 행사요건으로 지분 3% 보유 또는 0.1% 이상 지분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요구하며, 제안할 수 있는 안건도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 외에 안건(예: 환경 · 사회 · 지배구조)도 허용

문제점

- (기업 경영 일선의 혼란 초래)** 현행 상법과 제정안이 다루는 주주제안 안건 범위가 달라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기업 실무에 큰 혼란 발생 우려
 - 상법은 주총에서 상정 · 결의할 수 있는 주주제안 안건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반해, 제정안은 ESG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도록 허용
 - * 상법 제361조(총회의 권한)에 근거하여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주주 제안 안건은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
 - 법원 판례 역시 ①주주제안 내용이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이슈와 ②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봄 (경제개혁이슈 2024-3호)
- (주주총회 형해화)** 기업 주주총회가 주식회사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본질에서 벗어나 일부 주주들의 사회운동의 장(場)으로 변질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
 - 주주총회는 주식회사 최고기관으로서 임원의 임면, 합병 · 해산 결정, 정관 변경, 재무제표의 승인, 배당결정 등 기업 핵심사안을 주주들이 모여 최종 의결하는 중요한 자리이며, 이때 결정된 사안은 이사회를 구속

- 제정안은 ESG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사회에 대한 구속력도 없다고 하나, 주총 논의사항이 언론에 이슈화 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압박이 아닐 수 없음

- (이사회 역할 제한)** 이사회 재량으로 다를 수 있는 안건도 제정안은 주총에서 주주안건으로 다루게 함으로써 이사회의 권한과 자율을 제한

검토의견

- (반대)** 주주총회 본질을 훼손하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반대

6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

발의현황

- (발의자)** 김남근 · 신장식 · 한창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
- (주요내용)**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하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
 - 현재 상법의 제368조의4(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)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“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”만 도입
 - * 전자적 방식의 의결권 행사는 서면 의결권 행사방식(제368조의3)과 병행

문제점

- (장단점 검토)**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에 앞서 다양한 주주들의 주주총회 접근성이나 전자주주총회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
- 시간적 ·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지만 인터넷 등의 전자적 매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주들이 소외
 - * 美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전자매체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주들의 소외를 막고 경영진과의 현장 소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을 반대

- **(도입 의무화)**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전자주총과 현장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 준비상황이나 주주 선호를 외면하는 것
 - 전자투표 플랫폼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킹,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전자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, 오히려 각종 소송에 휘말려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짐
 -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이나 모범회사법, 독일의 주식회사법, 캐나다 회사법 등도 전자주총이나 전자+현장주총 병행 개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, 제정안처럼 전자+현장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진 않음
 - 전자주총 · 현장주총 병행 개최시 기업 입장에서는 의결권 행사 주식수를 합산하고 중복 투표를 제외하는 등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데 혼란이 큼

검토의견

- **(의무화 반대)** 전자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전자적 출석이 가능한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시행되어야 하며, 전자주주총회 개최는 의무가 아니라 주주들의 선택 및 기업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함
 - 시대 변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게 될 경우에도, 기업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한 균형적 제도 설계 필요
 - 주주의 권리남용 방지를 위한 질문권 행사 범위 명확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야 함
 - * 일본은 가상주주총회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실무적 처리방법 상세히 안내
 - * 한경협(舊 전경련)은 '21년 모범회사법 제안 당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긍정했으나, 그 도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주들의 선택에 맡김

<전경련 제안 모범회사법 중 전자주주총회 조항>

제231조(전자주주총회)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대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
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전자주주총회를 정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주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총회의 모든 과정이 화상과 음성에 의해 전송될 것
2. 주주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

- 3.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대리권 수여가 가능할 것
- 4.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의 질문 및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
- ④ 주주 또는 대리인이 원격통신을 통하여 투표 또는 기타 행위를 한 경우, 회사는 그러한 투표 또는 행위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.
- ⑤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III. 경제계 의견

- (경제계 우려사항)** 발의 법안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소수주주권 강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, 현실적으로 법 개정의 실익보다 기업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 큼
 -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으로 사법 리스크 증가, 불만 주주들의 소송 남발, 행동주의펀드 공격 증가, 경영판단 지연 등의 부작용 우려
 - 대규모 장치산업 투자, M&A를 통한 사업 확장, 투자자금 조달 등에 대한 기업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각종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들로 극도로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 디스카운트와 기업가정신 위축 초래
 - 수많은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불만 주주들이 이사에게 소송을 남발할 경우,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불확실성 초래
 - * 현재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우 1983년 최초 선언 이후 1987년까지 누적적자 1,400억원 발생 → 주주들이 배당 확대를 주장하거나 적자 발생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성공할 수 없었던 사업
- (건의)**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에 상정된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들 중에서 기업경영과 미래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 이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마련하여 건의드림
 - 주주환원 확대나 소수주주 보호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안 세부안건 중에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사안들도 있는 만큼,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요청드림

[참고]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이슈별 경제계 검토의견

주제	발의안	대표발의자 (의안번호)	발의안 주요내용	경제계 검토의견
이사 충실의무 확대	상법 개정안 <법사위>	강훈식 (2200687) 박주민 (2200457) 정준호 (2200144) 박상혁 (2202847) 김현정 (2202571)	- 이사 충실험의무 확대 - 이사에 공정의무 부과 - 합병 유지청구권 및 이사 손해배상책임 등 합병 관련 소수주주권 강화	<반대> - 기업투자 저해, 소송 남발, 기업 자금조달 위축, M&A 저해 등의 부작용 우려 -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활성화를 위한 상법개정이 오히려 기업 밸류 다운 초래
집중투표 의무화	상법 개정안 <법사위>	오기형·차규근 (2202706)	-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 의무화	<반대>
	상장회사지배 구조법(제정안) <정무위>	김남근·신장식·한창민 공동 (2202991)	- 그 밖의 상장회사는 집중 투표제 청구요건을 기준 3%에서 0.1%+6개월 보유로 대폭 완화	- 집중투표제는 2~3대 주주를 위한 제도로서 일반주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권한임 - 사실상 2~3대 주주나 경영권 공격 세력, 단기수익을 노리는 헤지펀드 등에게만 유용한 수단
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	상법 개정안 <법사위>	오기형·차규근 (2202706)	-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위원 전원 분리 선출	<반대>
	상장회사지배 구조법(제정안) <정무위>	김남근·신장식·한창민 공동 (2202991)	- 대주주 의결권제한은 개별 3%에서 합산 3%로 강화	- 투기자본에 의한 감사위원회 장악 및 경영권 위협 위험성 급증 - 감사위원 권한·역할 감안시 회사 핵심기술·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
독립이사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	상장회사지배 구조법(제정안) <정무위>	김남근·신장식·한창민 공동 (2202991)	- 사외이사 → 독립이사 명칭 변경 - 정관에 이사회 총원 상한 규정을 없애고 이사 총수의 1/3을 독립이사로 구성	<반대> - 현행 상법의 이사회 구성 관련 규제보다 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강제 더욱 심화 - 상장회사 독립이사 비중 강화(이사의 1/4 → 1/3) 및 정관에 이사회 총원 상한선 규정 금지 -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는 것 이외에 별다른 개정실익 없음
권고적 주주제안 도입	상장회사지배 구조법(제정안) <정무위>	김남근·신장식·한창민 공동 (2202991)	- ESG 이슈에 관하여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"권고적 주주제안" 도입	<반대> - 상법은 주총에서 상정·결의하는 주주제안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는데, 법안은 사실상 안건 통제 불가능 - 행동주의펀드나 경영권 공격세력의 권고적 주주제안권 남용 우려 - 기업 주주총회가 주식회사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본질에서 벗어나 일부 주주들의 사회운동의 장(場)으로 변질될 수 있음
전자주주 총회 도입 의무화	상장회사지배 구조법(제정안) <정무위>	김남근·신장식·한창민 공동 (2202991)	-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하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	<반대> - 인터넷 등의 전자적 매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주들 소외 -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전자 주총과 현장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 준비상황이나 주주 선택을 외면하는 것